

會計原則 生成의 歷史的 背景

李 正 浩

《차례》

I. 序 言

II. 1930年 前後의 會計思考

III. 初期段階의 會計基準

1. 會計基準에 관한 思考의 發達
2. 美國公共會計士會의 會計基準
3. 聯邦準備局의 統一會計試案

IV. 會計原則 生成의 背景

1. 大恐慌과 證券諸法의 制定

2. 青空法(Blue Sky Law)

3. 證券法(Securities Act)

4. 證券去來法(Securities Exchange Act)

V. 美國會計士會의 努力

I. 序 言

美國의 會計實務와 制度의 發展을 考察할 경우 1930年代와 1960年代는 特記할 만한 해(年)로 알려져 있다. 특히 1930年代를 境界로 하여 美國에 있어서의 會計는 質的으로 큰 變革을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변화를 가져온 것은 무엇보다도 第1次世界大戰(1914~1919) 이후의 好景氣에 따른 각종 產業分野의 擴張·發展과 그 뒤에 나타난 證券市場의 長期에 따른 새로운 經濟秩序의 모색이다.

1929年 後半으로부터 시작한 經濟恐慌을 經驗하면서 美國에서는 企業을 個人的 私有物로 인식하던 종래의 株式會社觀에 대한 反省이 나타나면서 社會的 制度로서의 株式會社를 認識하기 시작하였다. 이것은 株式의 社會的 分散에 의하여 所有가 分散되고 社會의 富가 分散되어 所得分配의 公平이 實現됨과 동시에 資本家에 의한 生產手段의 所有·管理가 아니라, 株式分散의 結果經營者가 生產을 管理支配하는 社會制度에로의 轉換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中小의 資本家뿐만 아니라 勤勞者 農民 그리고 一般大衆을 企業에 參여 시킬 수 있었다. 즉 所有의 分散⇒株式의 分散⇒所得의 公平한 分配를 通過해서 勤勞者 農民一般大衆을 企業 및 現體制에 參여 시킴으로써 歸屬意識을 形成시킬 수 있었다. 이같은 株式의 分散에 의한 株式(證券) 民主主義는 企業의 公開主義를 前提로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것이 法的制度로서 具體化된것이 1933年的 證券法(Securities Act)과 1934年的 證券去來

法(Securities Exchange Act)이다.⁽¹⁾

이들 聯邦證券法을 運營하기 위한 機關으로서 나타난 證券去來委員會(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證券諸法의 管理에 관한 權限을 가지고, 會計에 관해서 보면, 證券去來委員會에 提出하는 財務諸表의 樣式과 이의 作成節次・會計節次(會計基準)를 決定하고 上場會社로 하여금 이 會計基準을 준수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實際로는 證券去來委員會는 獨自의으로 會計基準(또는 原則)을 作成公表하는 것은 原則的으로 수행하지 않고 『會計連結通牒』(Accounting Series Release, ASR) 第4號(1938年)에서 證券去來委員會에 提出하는 財務諸表는 “實質的으로 權威있는 支持”(substantial authoritative support)를 받는 會計原則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될 것을 規定하였다. 이에 따라 會計原則의 제정을 職業會計士團體인 美國會計士會(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 AIA, 이것은 1957年에 美國公認會計士會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AICPA로 改稱되었다)에 委任하였다. 美國會計士會는 “實質的으로 權威있는 支持”를 받는 會計原則의 樹立이란 任務를 부여받아 『會計研究公報』(Accounting Research Bulletin, ARB)와 會計原則審議會『意見書』(Accounting Principles Board Opinions, APB opinions)를 냈고, 오늘날에 와서는 財務會計基準審議會(Financial Accounting Standard Board, FASB)의 『報告書』(Statements)를 公表하고 있다.

이와같이 볼 때, 會計原則이 형성된 것은 證券諸法의 制定과 證券去來委員會의 設置 이후라고 할 수 있다. 그 이전에는 會計報告를 規制하기 위하여 잘 定義된 基準은 없었다.⁽²⁾ 그러나 1930年 이전의 會計는 企業의 自由로운 意見에 따라 이루어진 會計라고 할 수 있으며 1930年代이후의 會計는 權威있는 基準에 따라 會計業務가 수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1930年 이후의 會計는 會計原則의 제정이라는 會計原則制定運動의 成果를 重要視하여야 할 것이다.

이곳에서는 會計原則에 대한 探求運動이 本格的으로 나타나기 이전의 經濟社會環境과 會計思考가 어떻게 展開되었는지 考察하기로 한다.

II. 1930年 前後의 會計思考

1930年代는 會計思考 및 會計原則을 會計實務에 具體化하는데 重要한 变혁을 이루한 時

(1) P.F. Brundage, Milestones on the Path of Accounting, *Harvard Business Review*, July, 1951, p. 76.

(2) John L. Carey, *The Rise of the Accounting Profession*, Vol. 1, AICPA, 1969, p. 144.

期가 된다. 즉 1930年 가을에 美國會計士會(AIA)는 投資家 證券去來業者 및 會計專門家등이 共同利害問題를 가지고 「뉴욕」株式去來所(New York Stock Exchange)와 協同하기 위한 委員會를 設置하였으며 또한 1930年에 美國會計士會(AIA)는 會計節次에 관한 問題를 檢討하고 會計職業에서 重要하다고 생각되는 意見書를 작성하기 위해서 최초의 常任委員會를 設置하였던 것이다. 처음에 會計節次에 관한 여러가지 疑問은 特定의 問題를 연구하기 위해서 設置한 特別委員會의 意見書에 비추어 解決하였던 것이다. 1930年에 나타난 그밖의 重要한 會計士의 問題로 展開된 것은 「뉴욕」株式去來所가 會計의 實踐的 側面에서 最初로 規制措置를 취했다고 하는 점이다. 그것은 子會社의 株式配當金은 子會社의 稼得利益 또는 利益剩餘金에 課해지는 以上의 金額이 親會社의 利益內에 算入되어서는 안된다는 것 이었다.⁽³⁾

1920年代 後半으로 부터 1930年代 前半에 걸쳐 發表된 諸論文과 여러가지 論議에서 나타난 會計思考에 있어서의 基本의 變化는, 會計目的이 종래에는 經營者와 債權者에게 情報를 提供한다는 데 두어져 있었으나 이 時期를 期해서 投資家와 株主를 위해서 財務的 情報를 提供한다는 目的으로 變화하였다라는 점이다. 이와 같이 會計目的이 變化하게 된 것은 會計專門家의 壓力에 의한 것이라고 하기 보다는 株式去來所와 財務上의 法的 規制로 부터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第一次世界大戰이후에 急速히 보급되기 시작한 株式會社制度는 會計情報의 새로운 필요성을 낳게 하였던 것이다. 즉 株主數가 急激히 增加하게 되자⁽⁴⁾ 企業秘密은 反社會的인 것으로 보았고 또한 個人 投資家뿐만 아니라 一般大衆도 財務的 公開를 要求하는 氣運이 일기 시작하였다.

會計目的이 종래의 經營者와 債權者를 위한 情報提供이라는 입장으로부터 株主 및 未來의 投資家에로의 財務情報提供에로의 重點을 變화시키는데 큰 影響을 미친 사람으로서 「리프리」(W. Z. Ripley)와 「혹시」(J.M.B. Hoxsey)를 들 수 있다. 「리프리」는 1915年에 鐵道業의 會計實踐에 관한 研究를 하고⁽⁵⁾ 1926年에는 工業會社의 株主들이 利用할 수 있는 會計情報가 얼마나 不充分한 것인가를 痛烈하게 批判하였던 것이다.⁽⁶⁾ 또한 「혹시」는 美國會計士會(AIA)의 年次總會에서 株主에 提供되는 財務諸表에 表示되는 會計情報은 容易하고 理解可能한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고 會計情報은 어떤 側面에서도 株主의 誤解을

(3) Eldon S. Hendriksen, *Accounting Theory*, 3rd edition, 1977, p. 54.

(4) 美國에 있어서의 株主數는 1900年에 50萬人, 1920年에는 200萬人, 1930年까지는 추정人員 1,000萬人으로 增加하였다.

(5) William Z. Ripley, *Railroads, Finance and Organization* (New York: Longmans, Green & Co., 1915).

(6) William Z. Ripley, "Stop, Look, Listen!" *Atlantic Monthly* (September, 1926), 이것은 *Main-*

排除하여야 하며 그들이 投資價值를 決定하는데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지적하였던 것이다.⁽⁷⁾

이 같은 批判에 따라서 美國產業社會에서는 報告實務를 改善하는 傾向으로 나타나 1930年까지는 貸借對照表는 보다 標準化되었고 簡潔한 損益計算書가 株主에 대한 年次報告書에 포함되어 獨立監查人에 의한 監查意見書가 例外 없이 規則的으로 適用되게 되었다.⁽⁸⁾ 美國鐵鋼會社(U.S. Steel Company) 라든가 그밖의 少數의 進步的 企業은 會計情報의 完全公開政策을 自發的으로 支持하고 나섰다⁽⁹⁾. 그러나 大多數의 大企業의 經營者는 이 같은 움직임에 별다른 反應을 보이지 않았다. 當時에 會社의 財務公開政策에 대한 外部로부터의 壓力은 거의 存在치 않았으며 大部分 州의 會社法의 報告規定도 19世紀 이래 거의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聯邦法도 이 같은 問題에 대해서는 아무런 規定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별」(Adolf A. Berle)과 「민스」(Gardiner C. Means)는 앞서 말한 「리프리」의 연구를 출발점으로 하여 現代의 企業과 그의 社會的 地位 및 株主와의 關係 등에 관한 理論的이고 權威있는 分析을 하였다. 그들의 著書『近代企業과 私有財產』(*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¹⁰⁾은 證券法(Securities Acts)의 青寫眞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사실 이것은 投資家를 保護하는 法律의 制定에 대한 壓力의 增大와 더불어 모든 法律의 基礎가 되는 原理를 설명한 것이다.

「별」과 「민스」의 主題는 現代의 株式會社가 美國 經濟에 巨變革을 가져왔고 이것이 만 들어낸 問題에 대한 解決이 公共政策에서 같은 程度의 拔本的인 변화를 要求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들은 1930年에 있어서 銀行 이외의 大企業 200個社가 銀行이외의 會社財產의 半가까이를支配하고 있으며 國家財產總額의 거의 1/4을支配하고 있다고 指摘하고 있다. 無煙炭 生產量의 半은 4個社에 의하여 採掘되고 있으며, 鐵鑛業의 1/4은 2個社가 장악하고 있고, 「알미늄」과 「니켈」生產은 事實上 獨占狀態에 있다. 또한 電力產業의 半 이상은 3個의 企業 「그룹」이支配하고 있고 自動車 生產의 거의 2/3를 2個社에서, 煙草製造의 70%는 3個社에서, 農業用機械의 半은 1個社에서 生產하고 있다. 「별」과 「민스」는 1932年에 美國의 製造資產의 65%를 約 600個社가 保有하고 있다는 事實을 明白히 밝히는 동

tree and Wall Street (Boston: Little, Brown & Co., 1927)에 包含되어 있음.

(7) J.M.B. Hoxsey, "Accounting for Investors," *Journal of Accountancy*, Oct., 1930, pp. 251-84.

(8) David F. Hawkins, "The Development of Modern Financial Reporting Practices Among American Manufacturing Corporations", *Business History Review* (Autumn 1963), p. 135.

(9) R.S. Clair, "Evolution of Corporate Reports" *Journal of Accountancy* (Jan. 1945), pp. 39-51.

(10) Adolf A. Berle, Jr., and Gardiner C. Means,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Property* (New York: Macmillan, 1933).

시에 이것은 이들企業의 2,000名의 業務擔當重役이 美國의 經濟活動을 事實上 支配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같은 企業集中現象이 繼續된다고 할것 같으면 1950年까지는 全國 企業活動의 70%가 틀림없이 200個 企業에 의하여 支配될 것인 란 것을豫想하고 있다.

여하튼 이와같은 企業集中 現象에 대한 批判과 더불어 一般投資家들이 企業의 財務的情報를 알지 않으면 안된다고 하는 입장에서 나온 財務報告書의 目的變化(종래의 債權者 및 經營者中心으로부터 株主 및 未來의 投資家)는 會計思考에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왔다.⁽¹¹⁾

- (1) 清算에 對立되는 繼續企業概念을 한층 強力하게 支持함으로써, 또한 貸借對照表를 종래의 思考와는 反對로 두 損益計算書의 連結環(link)으로 認識함으로써 價值의 報告書로서의 貸借對照表를 종래보다 重視하지 않게 되었다.
- (2) 損益計算書 및 統一의 利益概念이 한층 強調되게 되었다.
- (3) 比較的 完全한 財務諸表를 作成하고 또한 註釋을 많이 사용함으로서 적절한 財務的情報를 公開明示할 것을 要請하게 되었다.
- (4) 특히 損益計算書와 관련하여 報告에 있어서 繼續性이 強調되게 되었다.

위에서 본 會計思考의 변화는 1930年 前後의 會計文獻과 몇몇 會計團體의 報告書에서 發見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留意하여야 할 事實은 이와 같은 會計思考의 변화가 1929年の 株式市場의 崩壊로부터 直接적인 影響을 받고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 以前부터 시작된 制度的 變革의 結果라고 하는 점이다.⁽¹²⁾ 즉 貸借對照表 中心의 會計思考에서 損益計算書中心의 會計思考에로의 轉換은 第1次世界大戰으로부터 1930年代에 걸쳐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상 美國보다는 일찍이 獨逸의 「슈마렌바흐」(E. Schmalenbach)는 1908年에 企業은 資本의 狀態뿐만 아니라 經營活動에 관한 情報를 年次報告書로서 提示하여야 한다는 것을 指摘하였던 것이다. 또한 美國과 英國에서는 1920年代에 損益計算書에 관한 情報가 많은 企業에서 作成되기 시작하였으며 1920年代와 1930年代에 와서는 期間配分(allocation) 問題와 發生主義에 관한 論議와 아울러 이것이 損益計算에 미치는 影響에 관해서도 많은 報告書와 著述이 나타난 바도 있다.

이 期間에 나타난 다른 하나의 特徵的 侧面은 損失 및 利益을 移延시켜 期間損益을 期間別로 완만하게(smoothing) 하는 조치도 임의로 취하였던 것이다.

II. 初期段階의 會計基準

1. 會計基準에 관한 思考의 發達

(11) Eldon S. Hendriksen, Op. cit., p. 55.

(12) Ibid., p. 55.

「페라갈로」(Edward Peragallo)에 의하면 會計方法을 正當化시키려고 하는 많은 先驅의 試圖가 이미 1586年에 이루어 졌다고 한다. 즉 「피에트라」(Angelo Pietra)는 歷史的 原價, 獨立된 實體, 保守主義, 期間性과 같은 「독트린」을 分析할 實務簿記를 지지한 注目할 만한豫見을 한바 있다.⁽¹³⁾

20世紀 初期의 美國의 會計士들은 그들이 會計行爲를 수행할 때 따라야 할 指標가 되는 法典 또는 統一計定科目表를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常識을 기초로하여 會計節次를 判斷하는 傾向이 많았다. 當時라 하더라도 會計原則에는 2개의 相異한 主張이 存在하고 있었다. 「페이튼」(W.A. Paton)은 會計公準(postulates)을 설명함에 있어서 모든 規則은 論證可能性이 거의 없다고 전제하고 會計는 극히 目的이 있는 分野로서 그의 目的에 充分히 貢獻하게 되면 어떤 假定, 原則, 節次도 正當化된다⁽¹⁴⁾고 하는 當時의 大多數의 見解를 따르고 있다. 이에 대하여 「스프라그」(Sprague), 「스코트」(Scott), 「리틀頓」(Littleton) 등 初期의 몇몇 著者들은 會計原則은 會計實務으로부터 演繹되는 것이 아니라고 主張한바 있다. 예로서 「스프라그」는 그의 著書에서 “數學 및 分類科學의 一部門으로서의 會計原則은 先驗的(a priori) 論理에 의해서 確立될 수 있는 것으로서 當該技術을 둘러싼 慣例 및 慣習에는 依存하지 않는다⁽¹⁵⁾고 말하고 있다.

이상과 같은 諸見解는 會計原則에 관한 最初의 表明이 된다.

2. 美國公共會計士會의 會計基準

美國公共會計士會(American Association of Public Accountant, AAPA, AIA의 前身)는 1894年에 貸借對照表의 表示方法에 관해서 다음과 같은 決議를 採擇한 바 있다.

“決算貸借對照表의 表示는 換金性이 높은 順序에 따라 表示하여야 한다. 즉 資產：現金, 받을어음, 外上賣出金, 在庫資產, 備品, 機械 및 設備, 鐵道車輛, 不動產 및 建物, 借地權, 其他. 負債：流動負債, 즉 지급어음, 外上買入金 및 借入金 기타. 이들을 會計하여 剩餘金 또는 出資者 및 株主에 당연히 歸屬되는 資本金을 가지고 貸借平均한다.⁽¹⁶⁾

이 意見은 債權者를 위하여 會計情報提供하는데 重點이 두어졌음을 알 수 있다. 다음

- (13) Edward Peragallo, "A Commentary on Vigano's Historical Development of Ledger Balancing Procedures, Adjustment and Financial Statements during the Fifteenth,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Accounting Review* (July 1971), pp. 531-34.
- (14) William A. Paton, *Accounting Theory* (New York: Ronald Press Co., 1922; Reprinted by Accounting Studies Press, Chicago, 1962), p. 472.
- (15) Charles E. Sprague, *The Philosophy of Accounts* (New York: Ronald Press Co., 1913), p. iii, 또는 Maurice Moonitz and A.C. Littleton, *Significant Accounting Essays*, (Prentice-Hall, Inc., 1965), p. 53.
- (16) AIA,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1937* (New York, 1938), "A History of the 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 p. 6.

에는 同會가 1909年に 會計用語를 統一하기 위해서 會計用語의 定義를 公式化하기 위한 會計用語 特別委員會(Special Committee on Accounting Terminology)를 設置하였다. 이것은 職業的 會計團體로서 會計 또는 監查問題에 關한 그 自體를 表現한 最初의 證據가 되다. 당시에 同委員會에 賦與된 임무는 “會計單語 및 文句를 照會하고 整理하며 이들이 使用될 때의 각각의 相異한 用法과 關係시켜 表現하는 것이다. 本 委員會는 한 가지 以上的 뜻이 있을 때 正確하다던가 또는 추천할만한 用語를 決定하려 試圖하지 말아야 한다”⁽¹⁷⁾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왈튼」(Seymour Walton)을 委員長으로 한 同委員會는 즉각 業務에 착수하여 1909年, 1911年 그리고 1913年の 年次總會에서 수십개에 달하는 會計用語를 報告하였다. 1915年에는 同委員會가 公式構成員의 承認을 받기 위하여 會計用語의 「리스트」와 이에 대한 定義를 提出한 바 있다.

3. 聯邦準備局의 統一會計試案

美國의 경우, 第1次世界大戰中에 累進所得稅가 출현하게 되면서 外部監查人을 採用하는 企業이 점차로 增大되었을 뿐 아니라⁽¹⁸⁾ 企業이 報告하는 利益의 公正性에 관해서도 政府가 關心을 表示하게 되었다. 따라서 1917年에는 信用目的을 위해서 銀行에 제출하는 財務諸表의 作成表示法에 關한 標準化를 기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聯邦準備局(Federal Reserve Board)과 聯邦通商委員會(Federal Trade Commission)는 美國公共會計士會(AAPA)에 대해서 標準的인 會計節次에 關한 覺書를 作成할 것을 要請하였다. 이 覺書는 美國會計士會(AIA)의 理事會 및 聯邦通商委員會에 의해서 承認된 후, 聯邦準備局에 이를 檢討케 하기 위해서 提出되었다. 聯邦準備局은 이를 當정적으로 承認하고 全國의 銀行家나 銀行協會에 대해서 이를 檢討하고 批判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1917年 4月에 『聯邦準備局公報』(Federal Reserve Bulletin)에 統一會計(Uniform Accounting)란 이름으로 公刊되었다. 이것은 1918年에 사실상 改正됨이 없이 『公認된 貸借對照表의 作成法』(Approved Methods for Presentation of Balance Sheet Statements)이란 標題로서 再刊行되었다. 1929年에는 이것이 다시 『財務諸表의 檢查』(Verification of Financial Statement)란 이름으로 改正되어 聯邦準備局으로부터 公刊되었고 이는 다시 1936年에 가서 美國會計士會(AIA)에서 『獨立公共會計士에 의한 財務諸表의 檢查』(Examin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by Independent

(17) Twenty-second anniversary Year-Book (1909) of the American Association of Public Accountants, p. 159.

(18) M.E. Peloubet,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Accounting," in Morton Backer, ed., *The Handbook of Modern Accounting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55), p. 19.

(19) AIA, *Examin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by Independent Public Accountants* (New York, Jan., 1936).

Public Accountants)⁽²⁰⁾란 이름으로 公刊되었다. 1929年의 公報와 1936年의 公報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아주 興味있는 會計基準의 变화를 찾아볼 수 있다.⁽²⁰⁾

1929年版의 『財務諸表의 檢查』는 1920年代의 會計思考를 가장 잘反映하고 있다. 여기서는 會計報告의 目的을 信用目的에 두고 있는 것으로서 그 내용을 要約해보면 다음과 같다.

(1) 監査 및 貸借對照表計定과 관련하여, 流動資產과 流動負債의 表示에 관한 指示가 2大部分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점 (2) 在庫資產은 原價基準 또는 低價基準에 따라 表示하여야 할 것 (3) 監査 및 固定資產의 表示에 관해서는 重點을 期中の 變動과 分類에 두었다는 점등을 들 수 있다.

또한 損益計算과 관련하여 볼때 1929年版 公報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示唆하고 있다.

(1) 減價債却費는 利子와 稅金과 더불어 利益으로부터 控除項目으로 하였다는 점 (2) 當期純利益(net income for the period)과 當期의 利益·및 損失(profit and loss for the period)과를 구별하고 있다. 期間利益 및 損失은 期間純利益에 特別의 貸記項目을 加算하고 또 特別의 借記項目을 控除한 結果이다. (3) 前期損益의 修正은 剩餘金에 대한 加減으로 處理된다. (4) 損益 및 利益剩餘金結合計算書의 形式이 提示되었다.

1936年의 改正版은 1929年의 改正版과는 달리 信用目的 뿐만이 아니라 株主에 대한 年次報告(annual reports to stockholders)를 위해서 作成되는 財務諸表에 대해서 獨立公共會計士가 檢查할 때 적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意圖된 것이다. 1929年版이 公刊된 이후 1936年版이 나오기 까지에 나타난 會計思考의 变化가 있었던 점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會計報告書의 全般的 目的에 있어 变화가 있었다. 즉, 財務諸表는 經營者에 의한 經營過程의 期間的 觀察 및 報告를 提示하기 위해서 作成되어 企業에 있어서 投資의 狀態 및 當該期間中에 수행된 成果를 명백히 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2) 原價基準을 強調하는 同時に 繼續企業概念이 明白히 설명되어 있다.

“重要한 會計慣習의 하나는, 繼續企業의 貸借對照表는 企業의 營業活動이 永續된다는 假定하에서 作成된다. 工場資產, 長期投資 및 無形資產은 보통 現在實現可能價值 또는 再調達價值와는 關係없이 原價 내지는 다른 歷史的 基準에 따라 表示된다”⁽²¹⁾

(3) 原價基準을 점차로 強하게 支持하게 되나 1936年版의 編者들은 會計節次의 繼續의 適用의 必要性을 한층 認識하게 되었다.

(4) 投資家에게 보다 完全한 會計情報 to 提供할 必要性和 利益報告에 대한 改善 및 利益

(20) Eldon S. Hendriksen, op. cit., pp. 57-59.

(21) AIA, *Examination of Financial Statements by Independent Public Accountants*, op. cit., p. 2.

力認識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이 公報에서는 利益概念이 說明되어 있다. “投資家의 觀點에서 볼때 利益概念은 极히 重要하며, 利益計算은 적어도 貸借對照表와 같은 程度의 重要性을 갖는것이 오늘날 一般的으로 認定되어 있다.”⁽²²⁾고 보고 있다.

(5) 損益計算書를 重視하는 입장이 貸借對照表에도 反映되어 있다.

(6) 1936年版에 提示된 損益計算書는 1929年版에서 推奨된것 보다 簡單하다. 營業外損益 또는 臨時的 損益은 其他利益(other income) 또는 其他費用(other charges)이란 項目 내에 포함시키고 있다. 當期純利益(net income for the period)이란 項目은 削除되어 最下段의 數值는 剩餘金에 대체되는 當期純利益 또는 純損失(net profit or loss for period carried to surplus)로 되어있다.

1936年版 公報에 나타난 다른 하나의 重要한 特徵은 貸借對照表監查에 관한 事項이 모두 削除되고 그대신 財務諸表의 檢查(Examination of Financial Statements)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貸借對照表監查란 말은 1910年項에 처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1917年까지 널리 一般에게 普及되었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大規模會社가 生成・發展하고 原價計算方法의 急速한 進步와 所得稅法등으로 말미암아 利益 및 損失에 대한 重要性을 強調하는 傾向으로 나아가 종래의 貸借對照表로부터 損益計算書에로의 重點이 移動하게 되었다.

IV. 會計原則 生成의 背景

1. 大恐慌과 證券諸法의 制定

第一次世界大戰을 겪고난 후 1920年代의 美國經濟는 각종 產業分野에서 두드러진 擴張・發展을 이루하였고 또한 戰爭 中에 나타난 好景氣에 따른 增加所得의 賦蓄을 投資財源으로 한 證券市場의 活況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株式市場의 「붐」은 새로운 投資對象을 찾아 헤매던 未熟한 投資家들의 關心의 對象이 되어 新生企業에까지 競爭的으로 投資하는 現象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같은 傾向은 借入 또는 그밖의 一般金融에까지 依存하는 投機的 性向으로 바뀌었다. 株價는 確實한 根據도 없이 떠도는 그릇된 情報와豫測을 기초로 하여 高騰하고 이같은 好景氣는 그칠 줄을 몰랐다. 好景氣는 株式投機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浪費的 支出과 不動產投機가 合勢하여 物價는 天井不知로 치솟았다. 이에 따라 一般大衆은 投機勢에 끌려 信用去來에 의하여 投機的 株式賣買에 消日을 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은 投機性向을 우려한 나머지 美聯邦準備銀行은 1929年 2月 7일에 投機的 去來에

(22) Ibid., p. 4.

信用貸與를 制限할 것은 公表하고 證券業者の 貸與金을 6億弗 내지 7億弗로 限定하면서 大恐慌(the Great Depression)에 突入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시작된 美國 株式市場의 參狀은 未曾有의 것이었다. 美國證券去來史上 類例 없이 株式價格이 急轉直下로 大暴落이 시작된 것은 1929年 9月 6일의 일이다. 그후 微弱한 反動이 있긴 하였으나 일단 꺾여진 勢力を 回復시키지는 못하였다. 1929年 10月 29日, “魔의 화요일” 하루만에 失意에 찬 投機業者들이 1,640萬株를 賣渡하였다. 1920年부터 1933年까지 美國內에서 發行된 證券은 總額 500億弗이라 하나 1933年에는 그의 約 半은 전면 無價值한 것이 되고 말았다. 「뉴욕」 株式去來所에 上場되어 있는 株式價額은 1929年 9月 1일에 890億弗로 알려져 있으나 同年 9月과 10月사이에 이것이 約 180億弗의 下落을 보였고 2年 後인 1933年에는 740億弗의 下落을 보여 그 價額은 150億弗에 지나지 않았다. 여기에다 社債에서 입은 損失까지 加算하면 損失總額은 930億弗이 넘는 것으로 推定되었다.

1930年末까지 600萬名 以上의 勞動者들이 職場을 잃고 길거리에 헤매었으며 이 數字는 一年後에는 倍加하여 1,200萬名(全體勞動者의 4分의 1)의 失業者를 내었다. 農場勞動者들의 4分의 1이 農場을 잃고 말았다. 數百의 銀行이 倒產하고 生產工場들은 倒產되거나 아니면 操業을 短縮하여 겨우 命脈을 유지하는 程度에 그치고 景氣가 다시 回復될 날만을 기다리는 비참한 날을 보냈다. 이와같은 經濟與件下에서 一般大衆이 받는 經濟的 打擊은 이루 말 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것이었다. 이로 말미암아 被害者가 社會各層에서 多數 나타났을 뿐 아니라, 이것은 또한 美國經濟를 이끌어온 指導理念인 自由主義經濟體制에 대한 도전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이같은 問題를 해결하려는 努力의 一環으로 나타난 것이 1933年부터 1940年에 걸쳐 制定되고 또 改正過程을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된 다음과 같은 諸法律이다.

- (1) 1933年的 證券法(Securities Act of 1933)
- (2) 1934年的 證券去來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
- (3) 1935年的 公益事業持株會社法(Public Utility Holding Company Act of 1935)
- (4) 1939年的 投資信託證書法(Trust Indenture Act of 1939)
- (5) 1940年的 投資會社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 (6) 1940年的 投資顧問法(Investment Advisers Act of 1940)

2. 青空法(Blue Sky Law)

以上과 같은 證券과 관련된 諸法이 制定되기 以前에 美國에 있어서 證券去來에 관한 法律上의 規制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1933年 證券法에 의하여 證券規制가 있기 전에는 소위

青空法(Blue Sky Law)이라는 州法에 따라 어느 程度의 證券規制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青空法은 1911年「캔사스」州에서 처음으로 制定되어 그 후 急速하게 各州에 弘被되어 1921年에는 38州가 制定하였고 1933年에는 「네바다」州를 除外한 모든 州에서 어떠한 形태로 든지 青空法을 採用하고 있었던 것이다.⁽²³⁾ 이것은 證券, 投資銀行家, 證券의 販賣者에게 適用되는 反詐欺의 法律로서 이 法이 適用되는 範圍와 方法은 州에 따라 一定치는 않았다. 그러나 이 法이 最終的으로 추구하는 점은 詐欺를 意圖하고 있는 사람(fraudulent promoter)으로 부터 證券의 購入者를 保護한다고 하는 점에 있어서는 다 마찬가지였다.⁽²⁴⁾

青空法의 內容으로서는 最初로 制定된 「캔사스」州法이 가장 嚴格한 것으로서 詐欺를 意圖하고 있는 사람 뿐만 아니라, 貧弱한 事業計劃에 賢明치 않은 投資를 하는 市民을 保護할 것도 目的으로 하고 있었다. 이 法律은 모든 證券發行者로 하여금 여러가지 資料와 더불어 財政狀態에 관한 計算書(an account of its financial condition)을 Bank Commissioner에 提出할 것을 要求하였다. 따라서 “會社의 財政狀態에 대한 不正表示는 罰金이나 投獄에 의하여 處罰된다”⁽²⁵⁾고 하는 嚴格한 規定을 갖고 있었다. 또한 「스튜아트」(A. Stewart)에 의하면 많은 州의 青空法은 證券發行會社의 財務表諸에 대해서 獨立會計士에 의한 監查를 要求하였다고도 한다.⁽²⁶⁾

青空法의 州關係 規定은 그의 嚴格性에 있어서 州마다 큰 差異가 있었을 뿐 아니라 그 內容에 있어서도 統一되지 못한 점이 많아 여러 州에 걸쳐 證券에 대한 賣出節次를 밟는 경우에 逃避處가 되어 投資家를 充分히 保護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하여 聯邦法規에 따라 證券去來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찍부터 試圖된 바 있으나 1929年에 株式恐慌이 있기 전까지는 充分한 支持를 받지 못하여 法律로서 制定을 보지는 못하였다.

3. 證券法(Securities Act)

1932年의 大統領選舉戰에서 「뉴딜」(New Deal)政策을 들고 나선 民主黨 후보인 「루즈벨트」(Franklin D. Roosevelt)가 第32代 大統領으로 當選된 후 美聯邦議會의 上院 銀行通貨委員會에서는 證券去來行政의 基本方向에 대해서 2가지 方案을 내놓고 審議하게 되었다. 그 하나는 株式을 上場함에 있어서 聯邦政府가 發行會社의 內容을 審查하여 上場할 수 있는 會社와 上場할 수 없는 會社를 判斷하도록 權限을 賦與하는 方案이었다. 이것은 投資家

(23) David F. Hawkins, *Corporate Financial Disclosure, 1900~1933: A Study of Management Inertia within a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Doctoral thesis, Harvard University, 1962, p. 140.

(24) Ibid., p. 139.

(25) Ibid., p. 145.

(26) Andrew Stewart, *Accounting and Regulatory Bodies in the United States, in the AIA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1937*, The Ronald Press, 1938, p. 156.

에게 不當한 損害를 줄 危險性이 있는 株式을 證券市場으로부터 排除하려는 意圖에서 제안된 것이었다. 다른 하나는 聯邦政府가 株式的 上場適否를 判斷決定할것을 避하고 株式에 대한 投資上의 判斷은 各 投資家에게 일임하는 한편 政府로서는 上場會社가 投資家에게 情報의 公開, 特히 會計內容을 公表(disclosure)하도록 하자는 方案이 있다. 論議의 결과 첫번째案은 憲法에 違反된다는 違憲論과 聯邦政府의 介入을 警戒하는 意見이 있어 論議의 초점은 第2案에 集中되어 이 法案이 1933年 3月 29日 「루스벨트」 大統領의 立法要請의 書翰과 더불어 上下兩院에 提出되었다. 委員會에 의한 公聽, 審議, 修正調整을 거친 뒤에 同年 5月 27日에 大統領의 署名에 의하여 同法의 成立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하여 제정된 것이 1933年的 證券法(Securities Act of 1933)이다.

大恐慌후의 「뉴딜」政策의 一環으로서 證券法이 聯邦法으로 制定된 憲法上의 根據는 合衆國에 委讓된 權限事項인 州際商業 및 郵便과 관계가 있다는 점에 根據를 둔 것이다. 즉 證券의 發行과 交付는 州際商業이나 郵便의 手段을 利用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聯邦法으로서의 證券法에 따라 規制對象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聯邦法으로서의 證券法은 1887年に 制定된 州際商業法(Interstate Commerce Act)의 흐름과 같은 性格을 갖고 있다.

證券法에 의한 規制方法은 公開主義을 採擇하고 있는 것이 그 特徵으로 되어있다. 證券法은 앞에서도 說明한 바와 같이 어떤 會社의 證券이 發行될 수 있는가 하는 基準이나 發行證券의 價值를 決定하는 基準을 제시함으로써 證券의 發行을 직접 規制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證券發行時에 그것이 어떤 證券인가 하는 것을 判斷하는데 充分한 情報를 正確하게 投資家에게 公開할 것을 要求하고 그에 대한 判斷은 投資家自身이 할 수 있도록 하는 公開主義를前提로 하고 있는 것이다.

1933年的 證券法의 骨子를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1) 特殊한 證券에 관한 少數의例外를 除外하고는 證券의 發行會社는 證券去來委員會에 登錄届出書(registration statement)를 提出함과 아울러 證券의 購入者에게 취지서(prospectus)의 交付를 義務化하였다. 그렇지 않고서는 새로운 證券을 각州에 걸친 去來方法(interstate commerce) 또는 郵便으로 賣出할 수 없도록 하였다.

(2) 만일 登錄届出書가 重要한 事實에 대해서 그릇된 記述을 하였다던가 또는 이것을 省略한 경우에 그 證券을 取得한 사람은 發行會社, 그의 任員, 理事 또는 引受會社를 告訴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聯邦去來委員會(Federal Trade Commission)는 登錄届出書가 適切하지 못하다고 認定

될 경우에 登錄屆出効力停止命令(stop order)을 발하여 届出効力의 발생과 그 證券의 發行을 防止할 수 있도록 하였다.

대략 위와같은 내용으로 되어있는 證券法은 登錄届出書에 記載하여야 할 事項이 규정되어 있는데 가장一般的으로 이용되고 있는것이 Form S-1이란 것이다. 이것은 普通의 商工業會社가 證券을 發行할 때 이용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記載事項은 다음과 같은 31個項目으로 되어 있다.

- ① 發行價格 및 發行條件
- ② 發行計劃 및 引受業者와 引受業者の 責任
- ③ 登錄會社에 의한 發行受取金의 使用
- ④ 現金에 의하지 않은 發行證券의 發行額
- ⑤ 資本構成
- ⑥ 利益比較要約表
- ⑦ 設立의 州, 日時 및 組織形態
- ⑧ 届出會社의 支配會社와 支配基準
- ⑨ 事業內容 및 過去 5年間의 發展狀況
- ⑩ 主要工場, 鐵山 및 有形固定資產
- ⑪ 發起人名 및 發起人과의 去來(5年 以內에 設立된 會社의 경우)
- ⑫ 繼爭中의 訴訟
- ⑬~⑯株式, 社債, 그 밖의 發行届出을 完了한 證券에 관한 情報
- ⑯ 理事 및 任員의 姓名 및 職業(過去 5年)
- ⑰ 理事 및 任員에 대한 報酬
- ⑱ 届出會社 및 그 子會社株式의 買受優先權의 現存數
- ⑲ 主要株主
- ⑳ 理事 任員등 主要去來에 관한 利害關係
- ㉑ 財務諸表
- ㉒ 發行證券에 관한 市場制約等에 관한 契約事項
- ㉓ 發行費用
- ㉔ 届出書記載의 專門職業人(公認會計士등을 包含)과 會社와의 利害關係
- ㉕ 特別한 關係者에 대한 證券發行額
- ㉖ 非登錄證券의 發行額
- ㉗ 子會社 一覽表
- ㉘ 保存하고 있는 營業權 및 利權(子會社가 保有하고 있는 것도 包含)
- ㉙ 任員 및 理事의 免責條項
- ㉚ 發行済株式의 受取金 明細
- ㉛ 財務諸表 一覽表

이와같이 登錄届出書에 따라 公開되는 情報中에서도 財務諸表는 重要한 것이기 때문에 Form S-1 以外의 届出書類樣式에 있어서도 特殊한 證券에 관한 몇몇의例外를 빼고는 大部分의 樣式에 있어서도 記載事項으로 하고 있다.

4. 證券去來法(Securities Exchange Act)

1933年の 證券法이 證券發行時의 公開制度를 規定한데 대해서 1934年的 證券去來法(Securities Exchange Act of 1934)은 登錄 後의 流通證券을 對象으로 하여 投資家에 대한 繼續的인 公開를 規定하였다는 점에 特徵이 있다. 證券去來法의 内容은 대략 다음과 같이 되어 있다.

- (1) 新規 및 既發行 證券의 去來를 對象으로 하며 發行者가 그 去來所와 證券去來委員會(Securities and Exchanges Commission, SEC)에 届出하지 않고서는 上場할 수 없다.
- (2) 모든 證券去來所는 若干의 例外를 제외하고서는 證券去來委員會에 登錄하고 그의 監督을 받아야 한다.
- (3) 去來所에서의 去來方法에 대해서도 證券去來委員會가 監督規制의 權限을 갖는다.
- (4) 發行者에 의한 届出에 대해서는 年次報告(annual report) 및 그 밖의 것을 證券去來委員會와 去來所에 届出하여 最近의 情報를 포착할 것.
- (5) 店頭去來業者에게도 證券去來委員會에의 登錄을 要求하고 이를 監督할 것.
- (6) 證券去來金融에 대해서는 聯邦準備銀行이 matching rule을 마련하여 證券去來委員會가 그것을

指示하고 監督할 것.

위와같은 1934年的 證券去來法에 따라 證券去來行政은 종래의 聯邦去來審議會(Federal Trade Commission)로부터 證券去來委員會에 移管하게 되었다.

V. 美國會計士會(AIA)의 努力

1933年的 證券法을 효시로하여 證券去來에 관한 諸法이 制定되고 이것이 執行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會計內容의 公開問題, 財務諸表 作成의 統一性 및 監查問題를 重視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같은 當面問題를 解決하는데는 高度의 專門技術을 필요로 하였고 따라서 聯邦議會의 委員會에서는 專門家의 證言에 따라 立法方針을 檢討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같은 審議過程에서 專門的 意見을 代表한 機關으로서 公認會計士들의 全國的 團體인 美國會計士會(American Institute of Accountants(AIA), 이것은 1957年에 現在의 名稱인 American Institute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AICPA)로 改稱됨)였다.

이같은 問題에 대한 美國會計士會의 活動은 聯邦議會에 대해서 보다는 직접적으로는 「뉴욕」株式去來所(New York Stock Exchange) 및 그밖의 證券去來所와의 協力關係에서 나타났다. 당시에 이같은 活動에 中心이 된 것은 「메이」(G.O. May)를 委員長으로 하고 「보우만」(A. Bowman), 「카터」(A. H. Carter), 「카우치만」(C. B. Couchman), 「라이데스돌프」(S. D. Leidesdorf) 및 「라이브란드」(W. M. Lybrand)등을 委員으로 한 株式去來所 協力特別委員會(Special Committee on Cooperation with Stock Exchange)이었다.

이 委員會의 活動을 가장 잘 살펴 볼 수 있는 것은 「뉴욕」株式去來所 株式上場委員會(Committee on Stock List of the New York Stock Exchange)와의 往復文書를 통한 것이다.⁽²⁷⁾ 그중에서도 특히 重要視해야 할 것은 1932年 9月 22日付의 書簡이다. 즉 美國會計士會(AIA)의 株式去來所 協力特別委員會가 「뉴욕」株式去來所 上場委員會 앞으로 보낸 書信에는 다음과 같은 勸告案이 포함되어 있다.⁽²⁸⁾

- (1) 貸借對照表는 資產과 負債의 現在價值를 表示한 것이 아니란 점을 一般大眾에게 充分히 認識시킬 것.
- (2) 貸借對照表의 歷史的 性格을 強調하고 資產評價에 관한 基準을 明示할 것.

(27) 이들 書簡은 *Audits of Corporate Accounts*, 1932~1934, AIA, 1934年에 收錄되어 있다.

(28) AIA, *Audits of Corporate Accounts*, pp.12-13 및 George O. May, *Financial Accounting*, Macmillan Co., 1943, pp. 79-82.

- (3) 企業의 價値는 利益力에 左右되며 따라서 損益計定이 가장 重要하다고 하는 점을 強調할 것.
- (4) 少數의 포괄적인 會計原則을 普遍的으로 採擇하고, 그 原則의 範圍內에서는 어떤 會計方法을選擇適用한다 하더라도 制限해서는 안된다.

이에 이어서 同委員會는 「뉴—욕」 株式去來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다섯가지의 廣範한 (broad) 會計原則을 權告하였던 것이다.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 (1) 未實現利益은 直接적이든 간접적이든 利益計定에 貨記하여서는 안된다. 利益은 特定의 狀況을 제외하고는 企業의 日常的인 營業過程에서 販賣가 이루어진 때 實現되는 것으로 간주한다(實現主義原則).
- (2) 會社가 更生 또는 準更生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資本剩餘金은 當年度 또는 장래 年度의 損益 計定에서 費用을 相殺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資本剩餘金에 관한 原則).
- (3) 從屬會社가 合併 전에 創出한 利益剩餘金은 親會社 및 從屬會社의 聯結利益剩餘金의 一部를 구성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이와같은 剩餘金에 대해서 配當을 宣言한 여하한 부분도 親會社의 利益計定에 適당히 貨記할 수 없다(聯結財務諸表에 있어서의 利益剩餘金表示에 관한 原則).
- (4) 自己株式에 대한 配當金은 利益計定에 貨記되어서는 안 된다(自己株式에 관한 原則).
- (5) 任員, 從業員 또는 從屬會社에 대한 受取計定 또는 받을어음은 별도로 表示하여야 한다.

이와 아울러 美國會計士會(AIA) 特別委員會는 監查報告書의 標準的인 形式에 관해서도 최초로 勸告하였던 것이다.

이상의 會計 5原則에 離出資本 및 資產評價에 관한 여섯 번째의 會計原則이 1934年에 同會의 「멤버」 및 會計原則 研究特別委員會에 의해서 채택되었다. 이 여섯번재의 會計原則은 1939年 9月에 公刊된 『會計研究公報』(Accounting Research Bulletin) 第 1號와 同 第43號 第 1章에 收錄되었다.

이와 같이 하여 나타난 會計 6原則(보통 會計 5原則이라 稱함)은 投資家保護를 위하여 이루어져야 할 會計를 6개의 原則으로 要約한 것이며, 이는 成文化된 美國會計原則의 嘴矢로서 그 意義는 실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梅伊」(G. O. May)에 의해서 代表되던 당시의 美國會計士會의 幹部들은, 上場會社에 대한 財務諸表의 監查를 強制한다는 一般的 方針에는 贊意를 表明하고, 業界로 하여금 이에 대한 協力體制를 整備하는 한편, 財務諸表 作成의 統一을 避하고, 專門職業人인 公認會計士로 하여금 現實的인 指導를 하도록 하는것이 妥當하다고 하는 主張을 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一般的으로 認定된 會計原則」(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이라는 말로서 財務諸表 作成上의 會計方法에 어느 程度의 統一性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그러나 그 原則의 內容은 극히 광범위하고 大體的인 것만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具體的인 問題에 대해서는 會計士의 判断에 맡기는 것으로 하였다.